

의안 번호	제364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7월 11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7월 2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에서도 합법적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허가·신고 수수료 비용을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민간에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에 포함하여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수수료 기준 설정(안 별표3)
 - 신설) 다. 가로등 현수기(2개 1조) 개당 3,000원
- 나. 과태료 기준 설정(안 별표6)
 - 현행) 2)현수막 → 개정) 2)현수막(가로등 현수기 포함)
- 다.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순서(심의위원회→소위원회→간사)에 따라 조정 및 신설(안 제15조)
- 라. 그 밖의 용어 및 조문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